

충청북도대청호특별대책지역환경기초시설운영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안

의안 번호	183
----------	-----

제출년월일 : 1993. 1.

제 출 자 : 충청북도지사

□ 제안이유

대청 상수원의 수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대청호 특별대책지역안에 설치되는 환경기초시설의 운영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관리하기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 주요골자

- 대청호 특별대책지역안에 설치되는 환경기초시설의 운영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에 관한 세입, 세출항목 및 운용 전반에 관한 일반원칙 규정

□ 근거법령

- 1990. 7. 19일 환경처고시 제90-15호로 대청호 유역 666.22km²가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동 지역에 설치되는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비용을 수혜자부담 원칙에 따라 3개 시·도(대전직할시, 충청남도, 충청북도)가 분담하기로 한 협약서

□ 첨 부

충청북도대청호특별대책지역환경기초시설운영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안 1부

충청북도대청호특별대책지역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안

제 1 조(목적) 이 조례는 대청상수원의 수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대청호 특별대책지역안에 설치되는 환경기초시설의 운영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대전직할시장, 충청남도지사 및 충청북도지사가 분담규정하는 협약에 따라 충청북도대청호특별대책지역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세입) 이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호의 수입금으로 한다.

1. 대청호 특별대책지역내 환경기초시설운영비분담에관한협약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된 분담금.
2. 이 월 금
3. 기 타

제 3 조(세출) 이 회계의 세출은 대청호 특별대책지역안에서 발생하는 오·폐수(공장폐수를 제외한다)를 처리하기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다음 각호의 시설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1. 하수종말처리장
2. 간이오수처리장
3. 축산폐수처리시설 및 축산폐수공동처리장

제 4 조(임여금의 처리) 이 회계의 결산상의 잉여금은 다음 년도 세입에 충당한다.

제 5 조(준용) 이 특별회계의 운용에 있어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大清湖 特別對策地域內 環境基礎施設

運營費 分擔에 關한 協約書

제1조(目的) 본 協約은 大清上水源의 水質을 改善하기 위하여 環境政策基本法 제22조 제1항의 規定에 의하여 指定, 告示된 大清湖 上水源 水質保全 特別對策地域안에 設置되는 下水 處理場등 環境基礎施設의 運營, 管理에 所要되는 費用을 大田直轄市長, 忠淸南道知事 및 忠淸北道知事が 分擔함에 있어 必要한 事項을 規定함을 目的으로 한다.

제2조(遵守義務) 大田直轄市長, 忠淸南道知事 및 忠淸北道知事は 본 協約을 성실히 遵守할 義務를 지며, 環境基礎施設의 運營機關인 忠淸北道는 水質改善을 위하여 最善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3조(費用分擔對象施設의 範圍) 본 協約에 의하여 運營, 管理費를 分擔하여야하는 施設은 特別對策地域안에서 發生하는 汚, 廢水(工場廢水를 除外한다)를 處理하기 위하여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가 設置, 運營하는 다음 각호의 施設(이하 "分擔對象施設"이라 한다)로 한다.

1. 하수종말처리장
2. 간이오수처리장
3. 축산폐수처리시설 및 축산폐수공동처리장

제4조(運營費 總額의 算定) ① 忠淸北道知事は 매년 9월말까지 다음년도의 分擔對象施設에 대한 運營, 管理費의 總額을 1會計年度 單位로 算定하여 大田直轄市長 및 忠淸南道知事에게 이를 通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規定에 의한 分擔對象施設의 運營.管理費는 施設의 種類別로 人件費, 電力費, 藥品費, 슬러지 處理費, 修繕.維持費, 其他費用等으로 區分하여 算定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規定에 의한 運營.管理費 總額은 相互協議에 의하여 이를 確定한다.

제5조(運營.管理費의 分擔比率) 제4조의 規定에 의한 運營.管理費의 總額은 별표1의 方法에 의하여 算出되는 比率에 따라 分擔하는 것으로 한다.

제6조(分擔額의 納付) 大田直轄市長, 忠淸南道知事 및 忠淸北道知事は 제4조 및 제5조의 規定에 의하여 算出된 運營.管理費의 分擔額을 分期初月 以內 까지 忠淸北道 大淸湖 特別對策地域 環境基礎施設 運營.管理 特別會計에 納付하여야 한다.

제7조(豫算編成) 分擔對象施設의 運營.管理에 따른 分擔額은 忠淸北道 特別會計에 編成.運營한다.

제8조(精算 및 施設運營의 確認) ① 忠淸北道知事は 매년 12월 31일까지 分擔對象施設 運營.管理費 執行內譯 및 精算內譯을 會計年度基準으로 作成하여 大田直轄市長 및 忠淸南道知事에게 이를 通報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精算結果에 따라 運營.管理費의 過不足이 發生한 때에는 다음 會計年度의 分擔額에서 이를 加減한다.

③ 大田直轄市長, 忠淸南道知事, 忠淸北道知事は 施設의 運營事項 및 精算內譯을 確認할수 있으며 是正事項이 發見될 때에는 同會計 運營機關에 是正을 要求하고 運營管理機關에서는 是正結果를 關係機關에 通報하여야 한다.

제9조(分擔要素 및 對象施設의 調整) ① 分擔의 基準이 되는 原水配分量 및 地方財政自立도는

별표2에 정한 바에 의하며, 이는 2년마다 相互協議에 의하여 調整한다.

② 제1항의 規定에 의한 協議가 成立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地方自治法 제140조의 規定에 의하여 이를 調整한다.

제10조(其他協議) 본 協約書에 規定되지 아니한 事項에 대하여는 大田直轄市長, 忠淸南道知事 및 忠淸北道知事が 協議하여 決定한다.

附 則

제1조(시행일) 이 協約은 체결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92년중 稼動施設에 대한 運營費) ① 1992년 12월 31일 以前에 稼動되는 分擔對象施設에 대하여는 우선 該當 地方自治團體의 豫算으로 이를 執行한다.

② 忠淸北道知事は 제1항의 規定에 의한 '92년도 運營,管理費 執行內譯을 1993년 2월 28일까지 大田直轄市長 및 忠淸南道知事에게 通報하여야 한다.

③ 大田直轄市長 및 忠淸南道知事は 제2항의 規定에 의하여 運營,管理費 執行內譯을 通報 받은 때에는 6월 以內에 동 運營,管理費를 제5조의 規定에 의한 分擔比率에 따라 忠淸北道 特別會計에 納付하여야 한다.

1993.

大 田 直 轄 市 長 (印)

忠 淸 南 道 知 事 (印)

忠 淸 北 道 知 事 (印)